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6호서식] <개정 2025. 9. 19.>

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

신청인	선임인 [ ]해당 [ ]비해당	
	사업장명	
	주소	

제품명		[ ] 연구개발용 [ ] 비연구개발용	
결 과	[ ] 승인 [ ] 부분승인 [ ] 불승인	승인번호	※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

세부 승인결과

신청물질		검토결과		세부 승인결과
대체명칭	대체함유량	대체명칭	대체함유량	
1.				[ ] 승인 [ ] 불승인
2.				[ ] 승인 [ ] 불승인
3.				[ ] 승인 [ ] 불승인

기 타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

안내사항

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.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2.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3.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
4.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